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**(황숙희 의원 대표발의)**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21년 12월 일
제 출 자 : 황숙희, 전수곤, 김영래 배재만, 구교강, 김성우, 도희재

**1. 제정이유**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가. 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, 제3조)

나.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함(안 제4조)

**3. 조 례 안 : 붙 임**

**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17. ~ 12. 21.**

**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**

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

#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① 성주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결원, 출장, 기타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 관련 법령

▣ 지방자치법

제59조(의장 직무대리)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60조(임시의장)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